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100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2. 1.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5. 21. 작성한 증서 2018년 제4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089,273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20카정9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7.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5,089,273원 및 그에 대한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24%의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2018. 5.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5. 21. 작성한 증서 2018년제4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8. 5. 11. 피고로부터 67,259,000원을 차용하였고, 2018. 12. 31.까지 이를 변제하되, 이자는 201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1일 35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49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8. 6. 11.부터 2020. 4. 10.까지 이자 합계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5. 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는 2020. 5. 31. 무렵 주식회사D으로부터 32,519,72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도 함께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7. 8. 29. E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 계약금만 납입하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2,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시켜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을 바꾸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시켰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77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자료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한 체결되거나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다만, 피고가 이후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32,519,727원의 손해를 전보 받았고, 위 소비대차계약이 피고의 분양계약 관련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피고가 위 금액만큼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2020. 5. 31.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35,089,273원(= 67,259,000원 - 32,519,727원 + 위

변제금이 2020. 5. 10. 지급되지 않은 이자 350,000원에 먼저 충당됨으로써 감소하지 않는 원금 350,000원)이고, 그에 대하여는 연 6.24%(= 350,000원 × 12개월 / 67,259,000원 × 100%, 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089,273원 및 그에 대한 2020.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는 불허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